

교원 국외여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원의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행구분) 교원의 국외여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출장 : 국제회의, 학회참석, 연구시찰, 학생인솔 및 기술훈련등의 목적으로 총장의 명을 받아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유학 :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의 후원 및 자비로 본교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수학하거나 학문연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기타여행 : 전 제1.2호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여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여행자 선정) 국외여행자를 총장이 선정 또는 추천하여야 할 경우 여행의 목적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나 파견기관(또는 비용 부담기관)의 명시된 기준이 없거나 또는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이 다수인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선정, 추천한다.

1. 과거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의 횟수가 가장 적은자
2. 본교에서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자
3. 최근의 보직 수행기간이 오래된 자

제4조(자격) ① 전임강사 이상인 자. 단,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은 본교에서 5년이상 재직한 자에 한하며,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을 한 교원은 향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을 허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업기간중의 출장과 기타 여행은 학기당 1회에 한하여 허락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의 요청으로 여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시행기간) ① 출장은 2개월 이내에 한하여 명령한다.

② 유학은 2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기타 여행은 1개월 이내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6조(기간연장) ① 유학은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기타여행은 1회에 한해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여행의 개시와 종료) ① 국외여행의 개시일은 학기초로 하고 종료일은 학기말로 하여 명령 또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 불구하고 수업일수 30일 이상을 결하지 않는 출장과 기타여행은 학기도중에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보강이 동일 학기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허가) ①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교원은 해외여행허가원을 작성하여 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해외여행 출발 최소 3주전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허가한다.

② 여행을 희망하는 교원이 소속학과에 휴직교원과 국외여행 교원의 합계가 재직 교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여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9조(연장허가 절차)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자는 여행기간 만료 2월 이전에 총장에게 도달하도록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장허가 신청서 (사유, 기간등을 명시)
2. 연장이 부득이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총장은 제 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중의 보수) 휴직을 명하지 않는 여행과 수업일수 30일 이상을 결하지 않는 기타 여행기간 중에는 여행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여행기간 중의 현황 및 귀국후 결과보고) ① 장기 국외여행을 하는 자는 현재의 상황을 2월 간격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여행 후 귀국한 자는 귀국후 1주일 이내에 출장복명서에 총괄보고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보고서는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국외여행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총장은 징계에 회부 할 수 있다.

1. 여행목적에 위반한 경우
2. 여행기간중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제13조(복귀) ① 여행기간이 종료하면 즉시 복귀하여 정상근무하여야 한다.

② 여행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강의담당 교원의 현저한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은 그 교원의 복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복귀 불응자에 대한 조치) 전조의 규정에 따른 복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복귀하여야 할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